

#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

## □ 보고 근거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정관)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개정 사유

- 제1회 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의 명칭 변경
- 행정 SI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의 명칭 변경
- 조직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직의 명칭 변경
  - ▶ 혁신사업본부 → 스마트사업본부, 디지털정책팀 → 스마트정책팀, 메타시티팀 → 스마트라이프팀
  - ▶ 경영전략실 → 경영 혁신실, AI·빅데이터팀 → SI전환팀

## □ 주요 골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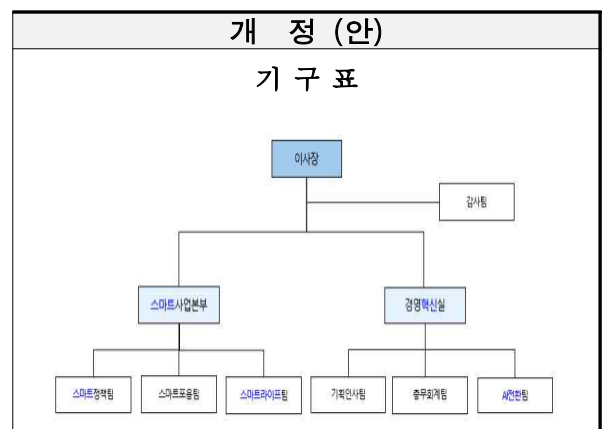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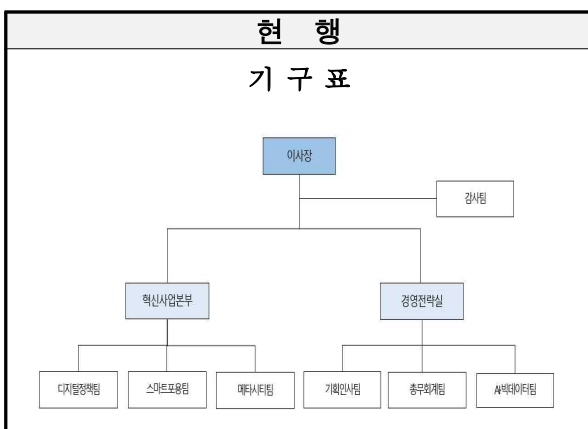
- 정관 <별표3> 기구표 개정

- (현행) 1실 1본부 7팀

- ▶ 경영 전략 실: 기획인사팀, 총무회계팀, AI·빅데이터팀
- ▶ 혁신사업본부: 디지털정책팀, 스마트포용팀, 메타시티팀
- ▶ 이사장 직속 : 감사팀

- (변경) 1실 1본부 7팀

- ▶ 경영 혁신 실: 기획인사팀, 총무회계팀, SI전환팀
- ▶ 스마트사업본부: 스마트정책팀, 스마트포용팀, 스마트라이프팀
- ▶ 이사장 직속 : 감사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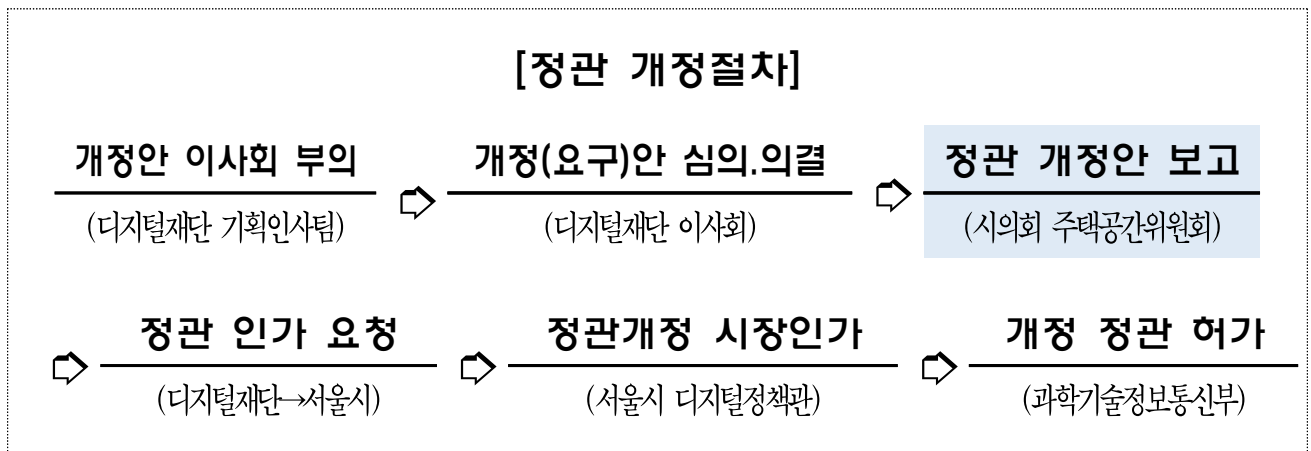


## ※ 부서명칭 변경 세부내역

기존부서명	소관 업무(사업)	변경부서명	비고
경영전략실	경영기획 및 혁신 총괄	경영혁신실	실 명칭 변경
기획 인사팀	기획, 인사, 조직, 복무, 홍보, 이사회, 의회 등	-	
총무 회계팀	예산, 회계, 출납, 계약, 전산, 기관장 수행 등	-	
AI·빅 데 이터팀	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, 공공데이터 활용· 분석 지원,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	AI전환팀	팀 명칭 변경 (AI 산업확산 트렌드 반영)
혁신사업 본부	본부 사업 총괄	스마트사업본부	본부 명칭 변경
스마트 정책팀	디지털 정책(디지털 전환, 포용, 미래이슈 등) 연구	스마트정책팀	팀 명칭 변경
스마트 포용팀	디지털약자 역량강화 교육,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운영	-	
메타 시티팀	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,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지원, 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 개최,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	스마트라이프팀	팀 명칭 변경 (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 사업 신규 추진) ※ 운영 인력 3인 채용 예정
감사팀	재단 감사 및 청렴 업무 등	-	

## □ 향후 계획(안)

-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변경 승인요청(재단→서울시) : '24.3
-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변경 승인통보(서울시) : '24.3
- 개정 정관 주무관청 허가요청 및 승인통보(과기부→재단) : '24.3



붙임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#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정관

<제정 2016. 05. 25.>  
<개정 2016. 07. 05.>  
<개정 2017. 05. 31.>  
<개정 2017. 10. 24.>  
<개정 2018. 03. 28.>  
<개정 2018. 12. 26.>  
<개정 2019. 03. 06.>  
<개정 2020. 05. 08.>  
<개정 2021. 07. 14.>  
<개정 2022. 04. 19.>  
<개정 2023. 03. 21.>  
<개정 2024. 03. 00.>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재단은 「민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,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21. 7. 14>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둔다.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
-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)과 벤처기업 지원
- 서울시, 투자출연기관,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
-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
- 빅데이터 관련 교육, 컨설팅, 공공·민간데이터 활용 사업

- 6.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
  - 7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
  - 8.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·연수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
  - 9.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〈개정 2021. 7. 14〉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행사업)** ① 재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 
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공고방법)** 재단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8조(임원의 구성)**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5인 이상 8인 이내(이사장 포함)
- 3. 감사 2인

② 상근 임원은 이사장에 한한다.

**제9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〈개정 2017. 10. 24, 2018. 12. 26, 2023. 03. 21〉
- 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- 3.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〈신설 2017. 10. 24, 개정 2018. 12. 26, 2023. 03. 21〉

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.  
 〈개정 2017. 10. 24, 2018. 12. 26, 2023. 03. 21〉

④ 시장은 이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

⑤ 선임직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⑥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,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해당 분야의 이해도가 있는 자로 한다. 〈신설 2018. 12. 26〉

**제10조(성과계약)** ① 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경우, 시장은 이사장과 이사장의 임기 중 달성하

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임원의 임기)**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,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6>

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③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2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
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, 동 조항의 위원추천을 위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 관여한 임원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 12. 26>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
2.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재단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재단의 임·직원(비상임 이사 제외) 및 시의 공무원(시의원 포함)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임원후보의 추천방법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의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

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-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 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 <신설 2023. 03. 21>
 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<신설 2023. 03. 21>
 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제6호에서 이동 2023. 03. 21>
 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23. 03. 21>
-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  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임원이 자격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직원의 임면)**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-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 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8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**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상근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9조(임·직원의 보수)** ① 재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
- ②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7. 5>

**제20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재단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1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재단의 이익과 이사장(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)

자신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(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)은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**제22조(대리인의 선임)**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 및 정원

**제23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이사회

**제24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5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재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0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 
(신설 2017. 5. 31)
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6조(이사회 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**제27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28조(서면결의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30조(의사록)**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자문위원단

**제31조(설치)**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자문위원단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32조(운영)** ① 자문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3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

③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 수입금, 법인사업수입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,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충당한다.

**제34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35조(기금)**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중앙정부 지원금
3.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
4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

**제36조(사업연도)**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7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〈개정 2018. 3. 28〉

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8. 3. 28〉

**제38조(결산)**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〈2022. 4. 19.〉

② 재단은 결산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 3. 28, 2022. 4. 19.〉

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39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.

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
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40조(정관의 변경)**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41조(해산)**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
**제43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연도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제3조(사업계획 등)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 제9조의 당연직 임원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2016. 7. 5.)

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7. 5. 31.)

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7. 10. 24.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8. 3. 28.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8. 12. 26.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9. 03. 06.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20. 05. 08.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1. 07. 14.)**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2. 04. 19.)**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3. 03. 21.)**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4. 03. 00.)**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##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원)

구분	출연자	금액	비고
계		500,000,000	
현금	서울특별시	500,000,000	설립출연

<별표2>

## 정원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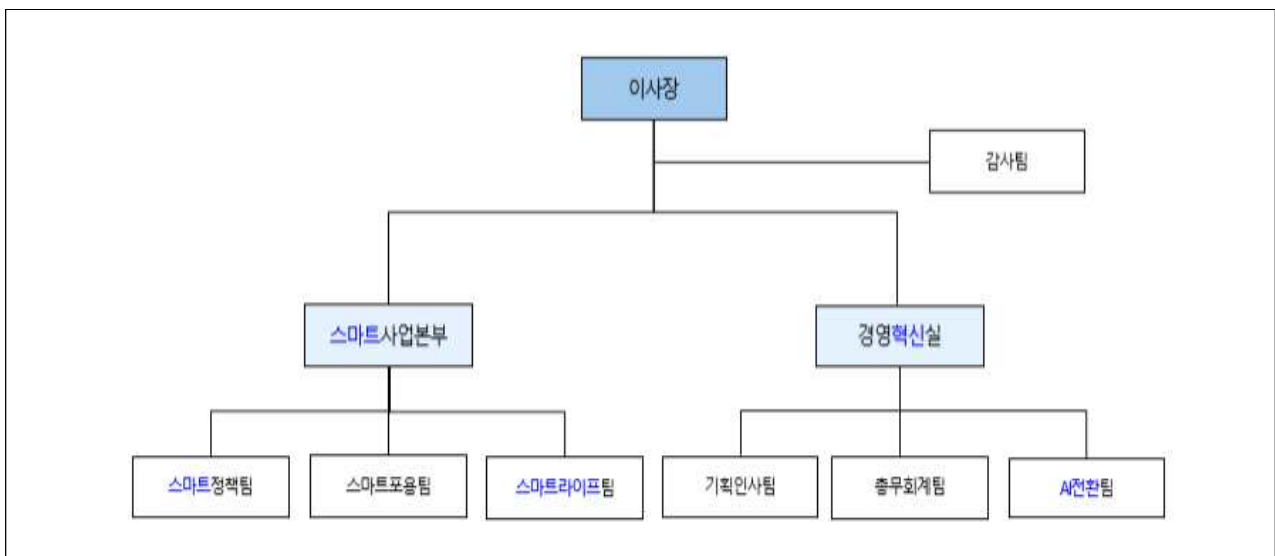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분	계	상근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
정원	45	1	1	1	3	8	16	13	2

<신설 2022. 04. 19>

<별표3>

## 기구표



<신설 2022. 04. 19, 개정 2023. 03. 21, 개정 2024. 03.00>